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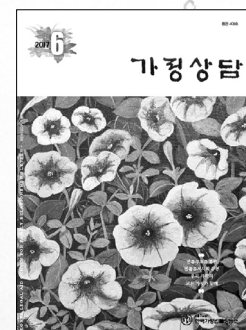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에서는 5월 20일,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20일에는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과천여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여성문제 전문 상담'을 진행하였고, ▲ 27일에는 관악구청 본관 앞마당에서 열린 다문화가족박람회에 참여하여 법률구조 및 본소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관련기사 24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의의와 한계
- 12 • 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 16 • 가정폭력상담실
- 20 • 인터넷 상담
- 21 • 좋은 책
공터에서
- 22 • 결혼과 인생(172) 영화이야기
필로미나의 기적 _ 김용언
- 24 • 상담소 소식
- 26 • 지부 소식
- 28 • 상담통계
- 29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새 정부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가족정책’을 요구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2016년 11월부터 6개월 여 동안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햇살이 비치는 광장에 선 느낌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지탱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지난 시기 우리가 겪었던 고뇌의 시간들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난 정권에 대한 실망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간 쌓여왔던 모순과 병폐가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른바 국정농단의 원인이자 결과였던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와 정책들이 횡행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 봅니다.

새 정부의 참신한 인선 특히 최초로 여성들이 책임자로서 최고 책임자를 맡게 된 외교부, 보건처 인사 등은 사회적으로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증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과거 관행처럼 행해졌던 몇

가지 일들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지도층으로서 좀 더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보다 더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논란이 되기 전에 정리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깔끔하게 시작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 정부의 성공 여부와 국민들이 평가하는 시각은 그 정부가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가정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여성과 가족정책의 주무를 담당하게 될 여성가족부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무엇보다 장관을 필두로 여성가족부 전체가 여성과 가족정책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 입안,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여성가족부는 출발도 늦고 부처의 규모도 작아 행정부 안에서 그 목소리마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어 우리 사회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 그리고 여성의 삶을 위해 진일보한 여성 가족 정책을 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요구합니다.

상담소가 문을 연 것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였습니다. 상담소 창설 자체가 설립자인 이태영 선생님이 대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의 결과였고, 이후 유신시대를 거치면서 정권과 불화했던 이태영 선생님을 대신하여 상담소를 돕고자 백인변호사단이 탄생하기도 했으니 상담소가 정치적 격변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구조 사업의 당위성,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온 상담소의 활동은 정치색과 무관하게 정당성과 방향성을 평가받아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성장하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관심사항에 따라 조금 더 성평등지향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제도개선, 법 개정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거나 그렇지 못했고, 가족정책에 있어서도 퇴보하거나 진일보할 수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지금 출발하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상담소는 60년 넘게, 두 세대를 지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가정과 여성문제를 그 당사자들과 더불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현행 법과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적 상황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노력까지 함께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족구성원 각각의 복리를 위한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동성동본 금혼과 호주제 폐지, 이혼제도 및 양육비 관련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내면서 언제나 여성과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흐름의 선두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담소이기에 여성과 가족정책 전반에 대해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기대에 부응하여 새 정부에서는 성평등을 기반으로 우리의 가족정책이 진일보하여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의 복리가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

집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의의와 한계

- 신분증명서의 개정을 중심으로 -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 상태(혼인 여부 등)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친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필요한 신분관계의 증명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개인의 신분 및 친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분관계를 공시한다는 신분등록제도 본래의 취지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6년 개정 전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증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개인의 신분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일부증명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낮아서 위

* 지난 2월 8일 열린 본소의 가족법개정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널리 홍보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발급된 증명서에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이를 불완전한 증명으로 인식한 나머지, 이른바 전부증명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는데(2016년 11월 30일 시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5종의 신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신분정보만을 현출시킴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종류의 증명서만으로는 개인의 불필요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증명을 필요로 사항을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래에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짚어본다.

II.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의 성과와 한계

1. 가족관계증명서

(1) 개정 전의 문제점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 전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었던 증명서는 증명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개인의 신분정보를 공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현출되는데, 현재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전혼 중의 자녀와 혼인외의 자녀도 같이 표시되었다. 따라서, 예컨대,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성(姓)이 다른 자녀가 동시에 표시되어(전 남편과 현재의 남편의 성이 다른 경우) 재혼하였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나 특정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굳이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녀까지

현출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증명의 필요와 무관한 자녀를 자동적으로 예외 없이 현출되게 하는 것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09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혼인외의 자녀나 전혼 중의 자녀를 제외하고 작성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생활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증명서에 일부사항에 관한 증명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증명서를 제출받는 측에서 일부사항증명서를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이른바 ‘전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개정법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한다(다른 종류의 신분증명서도 이와 같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기재된다. 따라서 전혼 중의 자녀, 혼인외의 자녀, 사망한 자녀는 현출되지 않는다(이러한 자녀는 상세증명서에 기재된다. 즉 상세증명서에는 이전의 전부증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가 일괄적으로 기재된다. 이외에 본인과 부모, 배우자가 기재되는 것은 물론이다).

(3) 개정법의 한계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불필요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혼한 여성 갑이 전혼중에 출생한 자녀 을과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상세증명서에는 자녀로서 을 이외에도 현재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병도 현출되므로, 을과 병이 성(姓)이 다른 경우에는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혼 사실이 외부에 드

러나게 된다(이런 경우 병이 현출되는 것은 증명의 목적이란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요청되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위의 경우 갑은 본인 갑과 자녀 을과의 관계만을 특정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필요한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정법이 특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근거 규정은 마련하였으나, 그 종류(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것인가)와 기재 가능한 선택사항(예컨대 부모와 특정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 기재), 시행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증명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제15조 제4항).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개정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 발급이 시행되지 않는 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 절반의 성공밖에 거둘 수 없을 것이다.

2. 기본증명서

(1) 개정 전의 문제점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 전의 기본증명서는 '기본' 적인 사항이라고 보기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었다(더구나 이러한 정보 중 상당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아발견,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국적,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성전환 등). 예를 들어, 과거에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로 모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이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여 생부로부터 인지되었다는 사실 등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었는데, 취업, 진학 등을 위하여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개인 정보의 공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사항증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도 일부사항증명서는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2)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개정법에 따라 기본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기아발견, 인지, 친권·후견, 실종선고취소,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이 기재된다.

(3) 개정법의 한계

가족관계증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불필요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개명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상세증명서에는 본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개명'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가 함께 기재된다. 이런 경우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등 개명과 무관한 정보가 함께 현출되어 있는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증명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유용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요청된다는 점과 특정증명서의 발급시기와 종류 등이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대법원규칙(가족관계등록규칙)은 우선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특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제21조의2 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이에 의하면 기본증명서의 특정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에 기재되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2호 제2조: 신청인은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예컨대 미성년자 A의 모가 A의 친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증명서 대신 특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의 목적도 달성하고,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그 외의 개인정보의 노출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에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의 증명(예컨대 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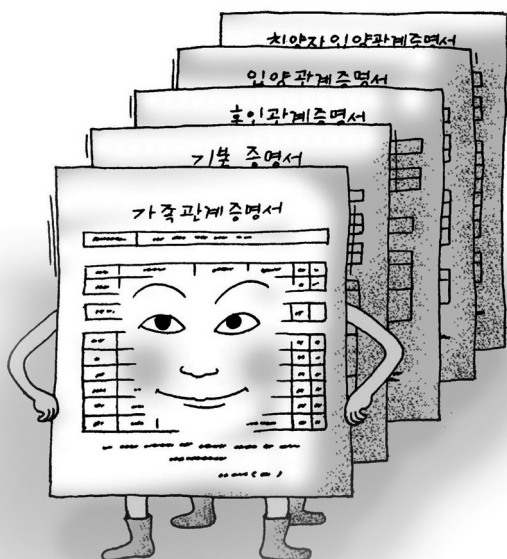
이외에 기본증명서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아래에 예시한 견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의 출생에 관한 사

항(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이 기재되는데, 기아로 발견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현출되지 않아서 기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공시되는 결과가 된다.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출생에 관한 사항은 대개의 경우의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일반증명서에 일률적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증명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즉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비단 기본증명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증명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으로서 본(본관)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 이후 현대 사회에서 본관이 갖는 의미는 실제상으로는 법적으로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분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 아무 의미가 없는 본관을 굳이 필수적인 기본정보로 공시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아로 발견된 사람의 경우에는 성·본의 창설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데, 이 때 창설되는 성·본은 우리 역사상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개 법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예컨대 한양 김씨, 안양 박씨 등). 이런 경우 일반증명서에 의한 본관의 노출은 본인이 기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정보가 되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분증명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는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4종의 증명서에 있어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구별 없이 본(본관)은 현출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증명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정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면 족할 것이다.

3. 혼인관계증명서

(1) 개정 전의 문제점

개정 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가 표시되었다.



과거의 이혼사실과 전배우자까지 함께 표시되므로, 역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혼인사실을 증명하여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본인의 과거 이혼사실까지 함께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일부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다른 증명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생활에 있어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2)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개정법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다.

일반증명서에는 i)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i)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i) 혼인이 취소된 경우 ‘혼인’ 및 ‘혼인취소’, ii) ‘혼인’ 및 ‘이혼’, iii) 배우자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재혼 이전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로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일반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세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의 일부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특정증명서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있어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시스템만으로도 개정의 목적 -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하고 사생활을 보호함 - 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개정 전의 문제점

개정 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입양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이 아니라 과거의 변동사항(입양 취소, 파양 등)까지도 전부 기재되었으므로, 다른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현재의 유효한 사항뿐만 아니라 증명의 목적과 관계없는 과거의 변동사항(친양자 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등)도 모두 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다른 증명서의 경우와 같다.

(2) 개정법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개정법에 따라 입양관계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다. 일반증명서에는 i)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i)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i)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 및 ‘입양취소’, ii) 파양한 경우 ‘입양’ 및 ‘파양’, iii)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입양’ 및 ‘입양종료’ 등이 기재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일반증명서에는 i)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iii)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에는 이외에 i)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입양취소’, ii) 친양자가 파양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등이 기재된다.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주로 현재의 양친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대개 일반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세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정보의 일부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특정증명서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어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시스템만으로도 개정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맺음말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5종의 신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이 현출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증명서가 실생활에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법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14조 제5항).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벌칙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일반증명서 제도가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제도만으로는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증명서는 바로 이러한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특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개정법의 취지는 상당히 퇴색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신분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증명서로써 증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특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때에는 다음 순서로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지막 순서로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Q & A 로 알아보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1)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종전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국민 한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로 발급되며, 각 증명서 별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됩니다. 또 상세증명서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 증명서(예: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본인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에 한하고, 기재사항도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기재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양된 경

우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되고, 친부모와 재혼한 양부(모)가 단독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 입양한 양부(모)와 재혼한 친생모(부)가 부모로 기록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위의 일반증명서 기재 사항과 모든 자녀(혼인 외 또는 전혼 자녀, 사망한 자녀까지 포함)가 기재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적이 기재되는지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각 개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고, 가(家)의 근거지로서의 호적 편제기준이었던 본적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는지, 또 등록기준지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각 개인별로 정해지고 선택이 가능하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합니다.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증명서의 발급

1. 증명서의 종류

1)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로 발급되며, 각 증명서 별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상세증명서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예: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관련, 친권, 개명 등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 변동에 관한 증명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며,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증명서의 교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만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¹⁾

한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및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사실조חק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아 볼 수 있는지요?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보려고 하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표시되고 형제 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관계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야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형제 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3. 기타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

1) 자녀의 출생신고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이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합니다.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생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출생한 날 또는 법원의 출생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혼인 외 자가 출생하였으나,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생부는 생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나 소송이나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혹은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예:민법상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나이와 등록부 상 나이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등록부를 만들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신청하고 그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창설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4)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합니다. 이름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재외국

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 중에 5년 이상 행방불명인 형제가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실종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와 기재사항

※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각 목적별로 증명서가 발급 되었으나,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현재의 신분관계 위주로 공개하는 '일부증명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라는 제한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2016. 11. 30.부터 개인의 정보 전체가 기재된 현행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발급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명 칭		증명관계	증명서 종류별 기재사항	
가 족 관 계 등 록 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일반	현재의 배우자·자녀
			상세	과거의 혼인 중 자녀, 사망한 자녀 등
	기본증명서	본인	일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상세	기아, 인지, 친권, 후견, 성·본 창설 변경, 개명 등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일반	현재의 혼인
			상세	혼인의 취소, 이혼 등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일반	현재의 입양
			상세	입양취소, 파양 등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일반	현재의 친양자 입양
			상세	친양자의 입양취소, 파양 등



가정폭력의 복잡한 현실, 상호 폭력 혹은 순간적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사건번호 2016버4**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 부부집단상담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부부집단상담 3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6.7.13.~ 2016.12.2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 1녀(34세, 23세, 32세)가 있다. 행위자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갈등 중에 폭력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바 있다. 보호처분 종결 후에도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행위자 역시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부부갈등이 계속되었다.

1차 보호처분 종결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2016년 1월 사건 당일, 행위자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행위자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반발심을 가진 행위자가 역으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행위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차량 운전석 백미러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부딪힌 것이다. 이러한 폭행의 결과 행위자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에게 고집과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노력을 해보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 역시 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어 부부집단상담과 1박2일 부부캠프에 참여하면서 혼인생활에 대한 점점 및 유지 여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상담초기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심을 갈등요인으로 꼽으면서 피해자가 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동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입장이 달랐다. 그러나 피해자는 행위자가 충분히 설명해주면 기다리고 의심하지 않겠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력하였다.

상담종결 시 행위자는 상담 때문인지,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전보다 피해자가 자신을 덜 의심한다고 하였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부부 모두 60대에 접어드는 나이로 인생 전체를 조명하고, 배우자 및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후 부부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는 상담종결 후에도 내적 치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조모임과 캠프 등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3**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음주문제상담 5회,
피해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음주문제상담 5회,
부부상담 4회, 부부집단상담 8회, 부부캠프 캠프 1회 등
총 35회 실시

상담기간

2016. 7.11. ~ 2016.12.3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1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1녀(11세)가 있다. 행위자의 친정에서 피해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출산 후 발생한 피해자의 폭력을 피하여 2년간 집을 나가 혼자 살다가 딸을 생각하여 피해자와 재결합하였다.

2016년 2월 사건 당일, 부부는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몸을 잘 씻지 않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행위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도 행위자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하였는데 본 건 외 평소 부부가 다룰 때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폭력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갈등요인을 제공하여 부부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초상담 결과 행위자는 화가 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딸에게도 심하게 화를 내어 딸도 피해자를 무서워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음식점을 하는 피해자가 영업시간 후 가게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등 불만이 있었다.

상담에 대한 부부의 기대는 피해자가 음주 횟수를 줄이고 일찍 귀가하는 것, 행위자의 분노조절 및 딸과 친밀감 형성 등이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음주횟수는 이전의 절반 수준인 주 3, 4회로 줄었고,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다. 행위자 역시 딸에게 화를 내는 횟수와 정도가 줄어서 딸이 행위자에게 다가오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상담기간 중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원가족관계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유년시절 경험으로 행위자의 정서가 불안한 점 등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부갈등에 대처하는 방법과 의사소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전에 0점이었던 행위자와의 관계에는 50점을 주면서 51점으로 1점을 올리기 위해서 화초를 키우겠다고 하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잘 키우면 잘 자라듯이 가족에게도 정성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때문이었다.

행위자는 과거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피해자와 딸에게 폭언을 퍼부었지만 상담종결 시에는 화를 잘 관리하게 되었다. 자신이 내는 화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 생각이 전환되어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65점을 주면서 66점으로 1점 올리기 위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겠다고 하였다. 특히 행위자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감사하는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사건번호 2016버3**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6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6.7.22. ~ 2017.1.2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7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경제문제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로 평소 갈등이 있었다. 2016년 1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화를 내며 따지자 행위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동거한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폭언과 폭력을 하였고, 2015년에는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부부싸움 끝에 상호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음주문제,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가 부부갈등의 주요인이라고 꼽았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주 1회 음주문제 상담을 받고 있었다.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 구조적으로 갈등요인이 감소되었고, 음주문제 개입으로 음주횟수와 음주량이 현격히 줄었다.

상담이 진행되던 9월 초에 행위자는 집을 떠나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1주 내지 2주에 한 번 집에 다녀가게 되었지만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서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배려하여 다투는 일이 없어졌다.

부부는 당장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배우자로서 의지하고 지낼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고, 자신도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고 음주문제를 개선한 점을 변화로 꼽았다. 특히 피해자는 오래전 헤어진 전혼자녀들과 1년 전부터 연락하며 지내는데 행위자의 배려를 느끼며 '돈을 모아 시골에 가서 내 집을 짓고 행위자와 함께 살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처분기간 중 행위자의 폭언이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폭력에 대한 인식과 부부관계가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6버1***/2016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3회, 음주문제상담 4회,
부부집단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4회, 부부집단상담 3회,
자조모임 1회,
부부상담 1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6.9.12. ~ 2017.3.11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남(7세, 4세)이 있으며,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부부는 성격 차이, 경제문제, 쌍방의 음주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2016년 5월 사건 당일, 아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을 터트리며 이혼하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하며 매트에 던지고 아내의 팔과 어깨를 비트는 폭행을 하였으며,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남편의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을 하여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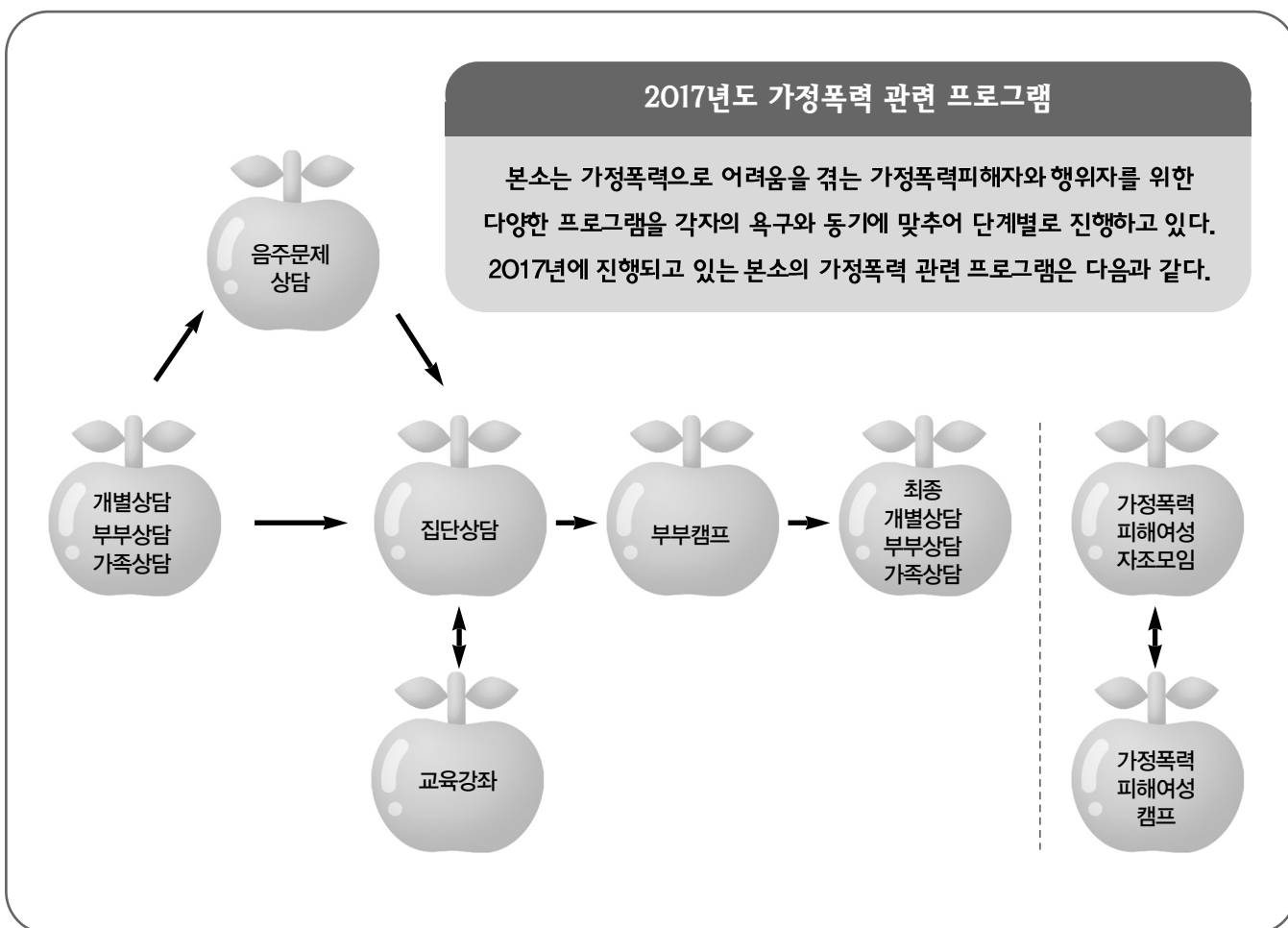
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부부 모두 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는데, 특히 남편은 비폭력대화법 이해 및 훈련 등 비폭력 대화법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부부의 갈등원인과 needs를 고려하여 음주문제 개선과 비폭력대화법 이해, 부부집단상담 등을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담 결과, 남편은 대화하는 법,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법 등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갈등상황에서 이전과 다르게 대처하게 되었다. 부부집단상담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보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이 많은 부부들도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는구나, 그런데 그 어른들도 지금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노력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오픈하고 집단상담 진행자와 구성원들의 조언을 경청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중 1박 2일 부부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는데 자녀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고 한다. 남편은 상담위탁 보호처분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 사실이 심리적으로 경각심을 주어 행동을 조심하는 기제가 되었고,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결국 자신이 더 많이 노력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내는 갈등요인의 하나였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극복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남편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하였다. 아내의 임신이 부부 쌍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부 모두 법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어 폭력재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살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남편의 외국 성을 따라 한국에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A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으며(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11조 제1, 2항 참조), 외국인 아버지의 인지 후 부의 외국인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조, 제8조 1항 본문 참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한국식 성과 본을 따르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외국식 성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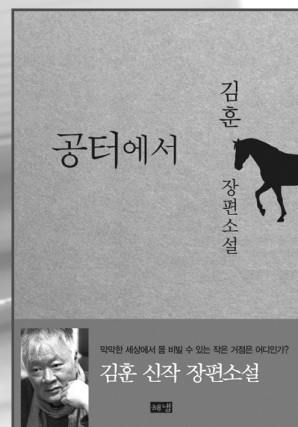
추후 귀하가 남편과 혼인신고 후 혼인중의 자를 출산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외국인 부의 성 또는 한국인 모의 성과 본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위 가족등록예규 제11조 제3항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한국에서

김민선 변호사



공터에서



김훈, 해냄, 2017

“이도순은 빵과 가마니를 받았다.”

홍남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이틀 만에 부산에 당도한 다음이었다. 젓먹이 딸과 그 딸을 업고 있던 남편의 손은 언제 놓쳤는지 모른다. 지옥과 같은 수송선에서 혼자 내려 생존의 상징과 같은 빵과 가마니를 받은 것이다.

“마동수는 가마니와 빵을 받았다.”

피난열차를 타고 헤아릴 수 없는 낮과 밤을 지나 부산진 역에 도착한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피에 절은 군복과 모포 등을 세탁하는 빨래꾼으로 낙동강에서 만나 장세와 차세, 두 아들을 낳고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 책은 이처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와 군부 독재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베트남 전쟁, 언론통폐합, 급속한 자본주의 등 우리의 근현대사를 살아낸 마 씨 집안의 가족사를 담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만주 일대를 떠돌았던 아버지 마동수는 암으로 죽고, 연탄 두 장을 들고 얼어붙은 비탈길을 오르다 고관절을 다쳐 입원 중이던 어머니 이도순은 치매를 앓다 죽는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꿈에 정착했던 장남 마장세는 전장의 악몽을 피하려하지만 악연의 탓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마동수는 차남 차세가 전방 GOP에 상병으로 복무하다 정기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었지만 잠시 여자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사이에 홀로 세상을 떠난다. 마장세는 부친의 죽음, 모친의 입원 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취업하지만 그의 첫 직장이었던 작은 언론사는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사라진다. 그 후 형의 주선으로 학교 동창이자 군 동기였던 오장춘의 회사에 잠시 근무하기도 하

지만 택배 오토바이를 몰며 책의 마지막 장에서까지 서울 남부 순환도로에서 동부 순환도로, 외곽 도로에서 중앙 도로로 하루 종일 달리고 있다.

“나의 등장인물들은 늘 영웅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머뭇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죄 없이 쫓겨 다닌다. 나는 이 남루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고 작가가 후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참으로 하찮은 인생들인 것이다.

만주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치던 마동수, 죽음 직전에 홍남에서 농친 딸의 이름을 부르던 이도순 그리고 그 아들들, 조금도 영웅적이거나 감동적이지 않고 심지어 하찮아 보이는 그 삶은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엄숙하다. 삶의 비애 같은 것.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발표 전, 아이가 물었다.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면 어떡해?

대답했다. 애야, 엄마는 87년 6월 항쟁 후 12월 선거에서 노아무개가 대통령이 된 것도 본 사람이야, 어떤 것도 그 이상은 아닐 거야.

1980년 광주에 살지 않았던 내 세대가 겪은 것은 겨우 이 정도, 그나마 우리 세대는 다행인 건가하는 비겁하고 사소한 안도감이 부끄러웠다.

작가 김훈에게는 지문과 같은 필체가 있어서 언제나 글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 “여생의 시간을 아껴 써야 할 것이다.”라는 본인의 말을 지켜 작가가 오래 오래 글을 써 주기를 바란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172)



필로미나의 기적

감독 스티븐 프리어스

출연 주디 덴치, 스티브 쿠건



한국에도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고 최진실이 출연한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다니엘 헤니와 김영철이 출연한 <마이 파더>, 하정우가 출연한 <국가대표> 등.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해외 입양아가 겪은 신산스런 삶과 고통도 충분히 눈물샘을 자아낼 만큼 묘사된다. 결말엔 가족의 상봉과 눈물의 치유, 화해가 등장한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필로미나의 기적>은 믿기 힘들 만큼의 놀라움을 거듭 안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주인공 필로미나(주디 덴치)는 아일랜드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그를 수녀원에 버리다시피 맡겼다. 갈 곳 없는 가난한 여성들이 수녀원에서 힘겨운 노동과 엄격한 정조 관념을 강요받다가 남자

를 만나 임신을 할 경우 벌어지는 비극은 경악할 만했다. 1950년대 아일랜드 정부는 수녀원들과 결탁하여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천 파운드씩 받고 '팔았다'. 주로 부유한 미국인들이 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입양해갔고, 그 시기 필로미나도 아들 앤서니와 생이별해야만 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앤서니에 대해 말하지 못한 채 매일 홀로 그리워하던 필로미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아들을 찾아보고 싶어 한다. 전직 BBC 기자 마틴(스티브 쿠건)은 우연히 필로미나의 사연을 접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고 나선다. 필로미나와 마틴은 앤서니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미국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필로미나가 '자신은 죄인이며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들에 대한 비밀을 50년 동안 홀로 간직했다는 점이다. 수녀원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고 육체관계를 맺었으며 심지어 거기서 쾌감을 느꼈다는 것, 피임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임신이 되었고 아이 아버지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아이가 거꾸로 선 상태여서 생명이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하나 받지 못한 채 목숨을 걸고 낳았다는 것. 필로미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고 믿었다. 종교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가난과 무지를 이용하여 더욱더 핍박을 가하는 억압자가 될 수도



있다. 필로미나에게는 ‘가난하고’ ‘무지한’ ‘여성’이라는 삼중의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이를 빼앗길 이유가 될 수 없었고 하물며 그것은 죄도 아니었다. 종교와 국가가 결합하여 여성의 신체결정권,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라는 중요한 결정의 선택권을 빼앗았고, 애초에 그 여성이 혼전성 관계를 맺었다는 ‘잘못’이 원인이라며 당당하게 발언했다는 게 더 큰 죄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통을 50년 동안 감내했던 필로미나의 현재를 그릴 때, 영화는 울분을 토해내거나 감정선을 극대화함으로써 관객이 무조건적인 동일시를 하지 않도록 절제한다는 점이다. 필로미나는 현재의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고(그녀에게는 똑똑하고 착한 딸이 있고, 무엇보다 로맨스소설을 탐닉하는 즐거운 취미생활도 있다. 그녀는 슬픔에만 젖어있는 희생자가 아니다), 자신이 겪은 비극에 대신 화를 내는 마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의 분노와 독설을 제지하는 위엄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종교의 억압으로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원칙이 있고,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개인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고통을 겪은 당시 1만 여명에 달하는 미혼모들의 사연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아일랜드의 불법에

가까운 해외 입양 스캔들은 1996년 공개되면서 엄청난 분노를 끌어올렸지만, 필로미나라는 평범한 여성의 실화와 그것을 다룬 책 및 영화의 공개를 통해 생이별한 어머니와 자식들의 수십 년만의 해후가 조금씩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실화가, 그리고 영화가 갖는 힘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2013년 베니스국제영화제 각본상, 영국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했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상·담·소·소·식



본소 교육부,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교육

5월20일 과천시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5월27일 관악구청 다문화가족박람회에 참여

본소 교육부는 5월 20일, 27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5월 20일에는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과천여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여성문제 전문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정 문제의 예방과 인식개선 및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명,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특히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라는 주제로 한 에코백에 그림그리기 체험행사에는 남녀노소 모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꼭 알아야 하는 가족관련 법 이야기, 법률구조가 무엇인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5월 27일에는 관악구청 본관 앞마당에서 열린 다문화가족박람회에 참여하여 관악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 특히 다문화 가족들에게 법률구조 및 본소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리고 가족법상식 책자 배부와 설명을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법개정서명을 받았다. 또한 언제든 법률적으로

가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 하였다.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어려운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고, 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출장법교육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 17명과 자원봉사자 60명, 그리고 1,233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법개정 서명(660명)과 법교육(570명)이 있었으며, 법률상담(3건)도 이루어졌다.(관련사진 2면)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5시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난 5월 26일에는 “관계의 뇌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있었다. 강사는 사랑의 본질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소셜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음식을 편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뿐 아니라 우정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균형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건강한 행복이다’라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3명이 참여하였고 참석자들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뇌라는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대적 상황에 맞게 설명한 것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강의는 KTV국민방송에서 「파워특강」편으로 촬영을 마쳤으며(6월7일, 오후 6시30분 방송예정), 다음 강의는 오는 6월 22일에 “분노의 의미와 기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관 임용 앞두고 본소 자원봉사

송현정, 이창현 변호사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관 임용을 앞둔 송현정, 이창현 변호사가 법률상담, 소장작성 등을 중심으로 본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5.10. 온누리호스피스대상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5.11. 강서자활지원센터 가족법교육
- 정연이 상담위원
- 5.15. 고양가족사랑상담소
‘가족법과가정폭력특별법강의’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5.19.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직원을 위한
가족법강의
- 복미영 상담위원

- 5.20. 경기도민을 위한 출장법교육2-과천시
- 김진영, 최수진 상담위원
- 5.26. 보현의집 노숙인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정연이 상담위원
- 5.27.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3-관악구청
-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오동준, 장민수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22일 광배희 소장의 인천가정법원 방문과 법원장 환담에 배석하였고, 31일 서울가정법원 합의부 조정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15일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의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서 「가족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31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였다.

광배희 소장, 인천가정법원 방문 등

본소 광배희 소장은 5월 16일과 25일 본소의 홍보 영화 및 이혼 전 교육 동영상을 위한 촬영을 했다. 22일 인천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안영길 법원장과 향후 협력관계에 관하여 환담하였다. 31일에는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131회 개교 기념식 및 제16대 총장 취임식과 오찬에 참석했다.



● ● ●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서암, 김지후, 김태주, 김형석, 박은정,
박효선, 윤원섭, 이소정, 임채룡, 진승기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방선영, 심미숙, 이승주, 장철진,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배선경,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맹현규, 배소희, 손지희, 이민주, 정재원, 강수지,
이윤복, 김수민, 곽민주, 서인우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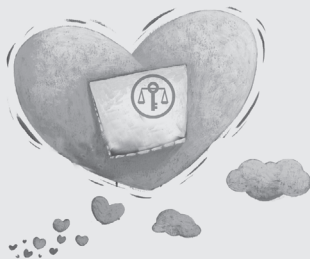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윤길현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수원지부 이상아 실습생이 본부에서 4월 10일부터 3개월
간 실습 중이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및 형사조정을 7회 실시하였
다. 이정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
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2회,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
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8회, 광주시법원 4회 실시하
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실시하였다. 8일
상담소 사례회의(8건) 및 수퍼비전(1건)을 실시하였다. 성
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폭력예방순회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문대근, 신학근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 한승
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12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
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김현명,
박지훈(성남), 황미옥, 임용호, 전태우, 김진영, 이상훈, 이
국희, 강은혜, 양승철, 김소이, 장미애 변호사가 법률상담
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울산지부

5월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익산지부

5월 10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2일 전북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24일 익산시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5월 11일 전주평화복지관 앞에서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고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7일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박형운, 정아람, 진희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5월 2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5월 17일 2017년 상반기 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 18일 2017년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2일 가정폭력유관기관장 현장동행진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다. 박은정, 정형준, 이영주, 여지은, 김영옥, 고정환,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 위탁 위기가족관계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을 상담소 회의실에서 2회 실시하였다.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민태식, 강재현, 전철우, 강은실, 홍강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5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이광우 부장판사 및 주무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2017년 4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4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1,624건으로 본부가 6,450건, 지부가 5,174건이었다.

본부는 5,903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07건·소장 등 서류작성 106건·소송구조 3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355건·화해조정 738건·소장 등 서류작성 25건·소송구조 56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90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3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2.1%→3.4%), 이혼(20.7%→24.1%), 사실혼해소(1.0%→1.3%), 위자료·재산분할(10.6%→11.7%), 친권·양육권(6.3%→7.5%), 부양(1.1%→1.3%), 개명(0.3%→0.5%), 성년후견(1.2%→1.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7%→1.0%),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간통(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90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43건(17.7%), 전화상담 4,600건(77.9%), 통신 및 인터넷상담 259건(4.4%),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5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998			
법률상담 (6,471)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110	5,094	266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75		109	43

* 2017/5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44,787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450	1,043	4,600	259		지상 1	5,903	407	106	34
강릉 (033) 652-9555	119	89	23				112	4		3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59	59	52				111	144		4
군산 (063) 442-1560	118	43	56				99	17		2
대구 (053) 745-4501	451	126	11	4		출장 107	248	203		
대전 (042) 520-5258	197	30	165				195		2	
동해 (033) 535-0188	84	48	35				83			1
목포 (061) 273-2514	188		188				188			
부산 (032) 667-2314	294	61	152				213	81		
성남 (031) 707-6661	313	155	72	3		출장 32	262	43	3	5
수원 (031) 243-4600	320	97	154			출장 50	301	17	1	1
순천 (061) 753-9910	191	41	144				185	5		1
충구 (02)2238-6554	330	221	107				328			2
안동 (054) 856-4200	111	12	61				73	36	1	1
울산 (052) 246-9568	128	22	100				122		4	2
익산 (063) 851-5113	241	78	155			출장 2	235		2	4
인천 (032) 865-1120	333	148	155				303	9	2	19
전주 (063) 244-2930	187	104	42	25	11		182	3	1	1
정읍 (063) 535-3705	108	56	46				102	5	1	
진주 (055) 746-7975	117	38	48				86	28		3
창원·마산 (055) 261-0280	275	136	101	1			238	34		3
청주 (043) 257-0088	231	47	69				116	107	8	
춘천 (033) 257-4688	195	51	12			출장 130	193	2		
태백 (033) 554-4004	81	38	27			출장 16	81			
평택·안성 (031) 611-4251	93	27	64			출장 1	92			1
제천 (043) 644-5690	130	42	87				129			1
포항 (054) 283-7555	80	16	62				78			2
지부총상담	5,174	1,785	2,188	33	11	출장 338	4,355	738	25	56
총 상담	11,624	2,828	6,788	292	11	출장 338 지상 1	10,258	1,145	131	90

**2017/4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92,529건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를 학대하고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92

담당 : 조용익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8세)와 피고(남, 50세)는 1995년 2월경에 법률상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사건본인들(여 19세, 여 17세, 남 8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도박게임에 중독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는 애정상실로 인하여 2014년 5월부터 별거하는 상황이었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원고는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16. 8.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잦은 외박 끝에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법률구조 2016-269

담당 : 박재범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60세)와 피고(남, 61세)는 1년간 동거하다가 1998년 3월경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당시 원고는 전부소생 성인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는 세 번의 혼인과 이혼을 한 후 전처소생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다. 피고는 혼인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고 사채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부소생 자녀의 적금까지 해지하여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는 화물차 운전기사를 하면서 잦은 외박과 가출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는 1998년 3월경 가출하여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어 원고는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6. 12.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노년 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452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1978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가정을 꾸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1987년경 이혼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하며 저축한 돈과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개인 양품점을 시작하였으

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7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 재산을 탕진하고 갈 곳을 잃은 신청인은 지인의 권유로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는데 지인이 투자금만 챙기고 잠적을 했다. 지인의 배신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신청인은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기 시작하였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채무를 갚기 어려워졌다. 현재 신청인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로부터 받는 월 60만원 가량의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안신경증과 불면증, 나이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채무에 대한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부도로 인한 채무를 전가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6-460

담당 : 한은석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9세)과 상대방(남, 53세)은 2000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사업부도 및 가출로 인하여 2001년 6월 1일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혼 후 청구인은 혼인생활 당시 상대방의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된 빚을 갚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보험설계사 등으로 밤낮없이 일하였다. 그 결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6년 8월 동사무소로부터 수술비를 지원받아 성대 결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 후 바로 청구인과의 연락을 끊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소득

이 없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인천가정법원 2017.2.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2017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월 30만 원씩을,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결정**

법률구조 2015-109

담당 : 배삼희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26세)과 상대방(남, 31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남, 9세)을 둔 사실혼 부부였다. 2009년 10월 경 상대방은 청구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였다.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건 본인의 소재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 경 어렵게 상대방과 사건본인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해 협의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현재까지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한 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24)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 종료 후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록 한다.

가. 매월 1회, 첫째 주 일요일 11: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나. 여름, 겨울방학기간, 구정, 추석 연휴기간 중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각 1박 2일

다. 자유로운 전화통화

라. 위 각 일정 및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폭력,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판결

법률구조 2015-319

담당 : 양범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9세)와 피고(남, 43세)는 2011년 8월 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전 자신의 자산상태 및 사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막대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주는 등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결국 피고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원고를 폭행해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원고의 전부자녀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사건본인에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 요청을 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 8.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2016. 8.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탈북으로 별거 중 태어난 사건본인과 법적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법률구조 2015-403

담당 : 장상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내용 : 원고(여, 50세)와 피고(남, 49세)는 1994년 3월경 북한에서 혼인하였다가 2014년 4월경 한국에서 협의이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고민 끝에 원고와 큰 아들이 먼저 중국으로 탈북 하였다. 하지만 탈북 후 원고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0년 경 중국에서 중국 국적 소외 000와 사실혼 관계를 갖고 사건본인(남, 16세)을 출산하였다. 2009년 5월 경 원고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피고와 법률혼이었던 관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2010년 5월경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있던 남편을 도와 한국에 입국시켰지만, 피고는 이미 중국에 다른 여자가 생겨 같이 살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였다. 현재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000와 재혼을 하고 사건본인을 키우는 중이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의 잘못된 신분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 7. 14)

1. 사건본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에 대해 과거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5-534

담당 : 한임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55세)과 상대방(여, 50세)은 결혼 후 슬하에 사건본인1(여, 20세)과 사건본인 2(남, 18세)를 두었으나, 1999년 6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왔다. 한편 청구인은 2002년경 재혼을 하며 전셋집을 얻기 위하여 2천 5백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는데, 집 주인의 채무로 인하여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 그 후 단칸방을 전전하며 사건본인들을 키워오던 청구인은 소득이 많지 않아 양육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14년경 청구인은 빚을 변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변제중이다. 반면 상대방은 초등학교에 근무하여 월 400-500만원 가량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어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7.2.1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다 연락을
끊어버린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6-67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6세)과 상대방(남, 45세)은 2003년 10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8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빚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2006년 9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결혼 생활을 이어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년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그런데 2012년경 상대방은 갑자기 교수의 꿈을 이루겠다고 미국으로 혼자 2년간 유학을 다녀오는 등 청구인과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과 다툼이 있을 때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폭행하려 하여 경찰을 부르기도 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상대방은 또 다시 미국을 간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협의이혼 당시 정하지 못하였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2.28.)

1.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
(1) 매월 2회, 첫째, 셋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
(2)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중 4박 5일
(3) 구정 연휴 설 전날과 설 당일에 걸쳐 2일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대해 상호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청구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한 판결**

법률구조 2016-129

담당 : 고은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42세)과 상대방(여, 44세)은 2001년 3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1(남, 14세)과 사건본인 2(남, 12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의 집에 거주하며, 트레이너로서 일하여 버는 월 15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어머니를 부양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 1이 중학교에 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사건본인 2 또한 중학교 입학에 앞두고 있어 양육비는 점점 늘어날 상황이다. 한편 상대방은 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양육비도 물론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의 수입으로는 더 이상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감당할 수 없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7.2.13.)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가정법원 2013호***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9. 27.자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 확정일부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남편의 외도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법률구조 2016-493

담당 : 김민규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85세)와 소외 망 000(1979년 사망)는 1952년부터 사실혼 부부였고, 1965년 4월 경 혼인 신고를 하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그러나 소외 망 000은 1965년 무렵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피고(남, 45세)를 출산하였다. 소외 망 000은 피고를 자신과 원고의 자녀로 출생 신고 하였다. 한편 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녀로 되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7.1.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가출, 연락두절로
아내를 힘들게 한
중국인 남편과에 대해 이혼판결**

법률구조 2016-297

담당 : 신현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2세)와 피고(중국, 남, 57세)는 2011. 12. 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원고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는데, 당시 피고는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때문에 원고는 이 사실을 혼인 후에야 알게 되었다.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서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마자 일을 하러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며,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원고를 방치하였다. 피고는 체류기간 연장할 때가 되어서야 원고를 찾아왔고, “잘못했다. 체류기간만 연장해주면 잘 살겠다.”고 용서를 빌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피고의 뜻대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었지만, 피고는 연장허가를 받자마자 원고와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연락두절, 가출로 피고와의 믿음이 깨어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7.4.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처중 증세를 보이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6-446

담당 : 김판묵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38세)는 피고(남, 38세)와 2002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여, 11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게임에 빠져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원고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채무는 점점 늘어만 갔다. 피고는 교제 당시부터 폭력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더 심해져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서 원고를 폭행하고 의처중 증세를 보이며 폭언을 일삼았다. 2009년경 원고가 피고를 피해 시설에서 생활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피고의 회유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피고의 폭언과 폭력은 나날이 심해졌고 원고는 폭력으로 인한 부상과 신경성 질환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사건본인들도 피고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많아, 사건본인들이 대소변 실수를 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공포심이 큰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4.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만일 지급이 지체 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2017. 5. 1.까지 10,000,000원

나. 2018. 7. 1.까지 5,000,000원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5.15.부터 2022.2.15.까지는 월 7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4.1.21.까지는 월 3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일정

- 매월 셋째 토요일 09:00부터 그 다음날 15:00까지(1박 2일, 숙박 포함)
- 설, 추석 연휴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2박3일
- 사건본인들의 여름, 겨울방학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각 3박4일간

나. 방식 : 피고가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그 장소로 사건 본인들을 원고에게 데려다 주는 방식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식을 조절, 변경할 수 있다.

라. 사건본인들의 의사 및 일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배우자의 명의도용으로 진 카드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447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세)은 1999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월급을 받은 것처럼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택시 운행에 필요한 택시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았지만,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배우자는 급기야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또 다른 카드를 발급받았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점점 채무액수가 커졌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02년경 신청인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신청인은 2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배우자가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자활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은 월 8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경 둘째 아이가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자녀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지경에 이르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04.04)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양육을 등한시 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로 친권자로 변경**

법률구조 2016-529**담당 : 최국신 변호사****사건명 : 친권자의 변경**

내용 : 청구인(여, 만49세)은 상대방(남, 만53세)과 2006년 협의이혼 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여, 만13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혼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친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친권자는 상대방,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혼 후 처음 얼마동안은 상대방이 일년에 1-2차례 사건본인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약간의 양육비를 주기도 하였으나, 3년 정도 이후 외국 국적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자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해지면서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사건본인의 체크카드나 휴대전화를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수학여행에 필요한 여권도 만들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7.3.28)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월 400만 원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

법률구조 2016-534**담당 : 이영임 변호사****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5세)와 채무자(남, 49세)는 2000년 7월 4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15세, 남10세)을 두었지만, 채무자의 도박 채무로 인하여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2011년 12월 17일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채권자는 친정의 도움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일을 병행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이 커가면서 필요한 양육비도 늘어만 갔고, 혼자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2014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과거 양육비로 2,5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월 14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채무자는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위 판결문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0.)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면책허가 당시 알지 못해 누락된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

법률구조 2017-7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면책확인

내용 : 원고(남, 58세)는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년 9월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5년 9월 피고로부터 채무 이행 독촉에 관한 우편물을 받고나서야,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기억하지 못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빠뜨렸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3급 지적장애인으로 국가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으며 홀어머니와 조카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추가로 발견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 000000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에 대해
양육비 증액 강제조정**

법률구조 2016-249

담당 : 서경화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증액청구

내용 : 청구인(남, 39세)과 상대방(여, 36세, 국적 중국)은 2004년 12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0세)과 사건본인2(남, 8세)를 두었으나, 2011년 9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1.10.01부터 2027.06.29.까지는 매월 20만원을, 2027.06.30.부터 2029.02.16.까지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청구인의 이른 출근 시간과 늦은 퇴근 시간으로 인해 사건본인들은 부득이하게 방과 후 수업 혹은 학원 등을 다니며 생활해야 했다. 그 결과 사건본인들의 사교육비로만 한 달에 130만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기본적인 생활비도 필요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4000만원이 넘는 연봉과 5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집행과 함께 상대방의 소득을 반영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강제조정 (서울가정법원 2017.2.13)

1.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드단****(본소), ****(반소)사건에서 2011.9.19. 성립된 조정조서 제4,5항 기재 양육비 및 면접교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2017.2.28.까지 500만 원을, 2017.4.30.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7.5.부터 2018.12.까지 월 20만 원씩을, 그 다음달부터 2026.6.까지 월 80만 원씩을, 그 다음달부터 2028.2.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3. 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매월 2회)

나.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키즈카페 등 적당한 장소로 가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식사비 등 비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번갈아 부담하기로 한다.

다. 위 각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자녀의 부(父)에 대해 감치 결정**

(감치결정을 받고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여
감치 취소 결정됨)

법률구조 2016-290

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여, 49세)은 2005년 2월경 피신청인(남, 47세)과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사이의 자녀인 사건 본인(여, 12세)을 출산하였다. 이후 2007년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사건 본인을 피신청인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과 함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로 7,800,000원을, 장래의 양육비로 2007.9.5.부터 2025.1.12.까지 매월 말일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본소의 법률구조를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다시 본소의 법률구조를 받아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감치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피신청인에 대해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피신청인은 바로 신청인

에게 총 800만원을 입금하여 감치결정이 취소되었다.

결과 : 감치결정 (성남지원 2017. 4. 27.)

의무자에 대하여 감치 1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진행이 종료된다.

**혼인생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입국을 거부한 중국인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369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내용 : 원고(여, 50세)는 북한에서 태어나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홀로 중국으로 탈북 하였다. 중국국적의 피고(남, 50세)와 동거를 하다가 사건본인(여, 11세)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이후 북한에 있던 자녀들이 중국으로 탈북하면서 사건본인과 자녀 2명을 모두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원고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와 연락을 취하며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할 것을 몇 번이나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끝내 입국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4.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명예퇴직 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많은 빚을 진 6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416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남, 63세)은 1998년경 IMF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대출을 받아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졌고, 배우자는 신청인과 상의도 없이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빚은 계속 늘어나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신청인은 집을 나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노숙생활을 하였다. 현재도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하며 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립 희망원룸센터'의 도움으로 월 8만원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이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 4. 4)
채무자를 면책한다.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률구조 2016-432

담당 : 성정모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15세)는 이 사건 특별대리인인 생모(여, 56세)와 사실혼 배우자인 생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원고의 생모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남, 58세)와의 첫 번째 결혼에서 부부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와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에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두 번째 배우자와도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 되었다. 생모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중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고 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로 지내왔다. 이후 2016년 경 생모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으로 이혼이 되었다. 원고는 현재 학교 측의 배려로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지만, 차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17.2.10.)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7-138

담당 : 한정운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

내용 : 채권자(여, 44세)와 채무자(남, 48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7세)을 두었지만, 채무자의 외도로 인해 2002년 7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채권자는 파출부로 일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며 매우 적은 수입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지만, 채무자는 이혼 후 14년 동안 약 1년 6개월간만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사건본인을 만나러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2016년경 채무자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과거 양육비 4000만원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 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지만 채무자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조서상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결정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5.12)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 ▶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4시~8월 27일(일) 오후 1시
- ▶ 대상 :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한 신청자
(48개월이상 중학생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 장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 K)호텔
- ▶ 신청방법 : 전화로 수시 접수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여 참여의사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7년 7월 22일(토)~7월 24일(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 내용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2.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5.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6월 12일 / 6월 26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1월, 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6월 22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7월 27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II)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일시

2017년 6월 23일 (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순서

●인사말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및 피해자 사후조사 결과 발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좌 장 :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가정폭력처벌법의 실무상 문제점」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토론발표 | 고경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